



정보의 집중관리와 교환체제 확립이 경제적

1. 위험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60년대 초이나 손해보험업계에서 위험관리가 본격화된 것은 1973년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법정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국가차원의 사업이 되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1977년의 보증보험과 1981년 안국화재를 시발로 해서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과단위 또는 팀규모의 위험관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원구성이나 수행업무가 화재보험물건의 위험조사에 국한되어 있어 그 활동이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 회사에서는 부단위 조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에서의 위험관리업무는 언더라이팅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물론 클레임을 통제하는데 직접 공헌하기 때문에 보험경영면에서 그 기여도는 중차대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및 이익관리면에서의 위험관리는 보험사업의 손해를 경감시키거나 배제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이 상 화
(한국보험공사 조사부장)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위험관리는 보험사업의 대내적인 면과 대외적인 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보험자는 우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보험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그 위험을 파악 분석하고 측정평가 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험보호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잘못된 평가는 보험담보방법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수 있고 비용부담의 낭비를 초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된다. 심한 경우에는 오판에 의해 위험자체

를 무시하거나 경시함으로써 예상외의 대형사고를 입게된다. 이 단계에서 피보험사업체에서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서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방법으로는 기술적인 방법과 재무적인 방법이 있다.

피보험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건물, 기계, 장비등의 위험발생으로 입을 손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취하여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적극 노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손해예방활동에 대해 보험자는 기술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여 대외적으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한편으로 이와 병행하여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자금조달을 위해 자가보험기금을 적립하거나, 아니면 보험시설을 운영하여 타인의 위험을 부담하는 일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는 보험자에게 이들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이러한 위험중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

는 순수위험을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도 일정한 보험조건하에 받아들이며, 또한 위험정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일정한도까지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보험자 자신의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위험을 최소화시켜 사업안정을 도모하도록 대내적으로 위험관리를 하게 된다.

2. 위험관리업무의 활성화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의 위험관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몇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화보험회 산하의 방재시험소를 확대강화시키는 일이다. 즉, 현재의 화재위험에 수반하는 방재연구사업에서 장기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건물, 기계등의 화재·폭발·파손위험의 방재시험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도난, 자동차충돌사고 등의 재산위험에 대한 안전보호 및 손해방지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정문제는 재산보험의 손해통제에 기여할 바가 크게 될 것이므로 손해보험업계의 공동지원과 기업체의 용역사업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각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조직을 과단위에서 부단위 규모로 확대시키고 나아가서 담보위험의 크기나 성격에 비추어 독립된 위험관리회사로 점차 발전시켜야 하겠다. 위에 언급한 화보험회의 방재시험소와 보험자의 독립위험관리회사의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전자는 위험에 대한 일반적

인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후자는 각보험자가 거래하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체결에 수반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양립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공동 방재기구로서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nsurance Crime Prevention Institute 등과 같이 보험자가 설립한 독립된 위험관리회사가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Swiss Re사, Munich Re사, Commercial Union 사 등에서 별도의 방재시험연구기관 또는 위험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째로 보험자 자신의 위험관리기능 수행 내지 활동면으로 보아 위험선택에 있어서 우량물건을 인수하고 그 보유를 증대하여 보험경영수지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물건의 위험정도와 안전조치여하에 따라 적용할 할인할증률을 확대함으로써 피보험자 자신이 담보물건에 대한 위험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기울이게 함과 동시에 통상의 손해율을 넘는 물건이나 거액물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전체로서 정보의 집중관리와 교환체제를 확립함이 경제적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일정수준 이하의 표준미달물건에 대해서는 위험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보험보호대상에 제외시켜 피보험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다.

네째로 현재는 화재보험 중심의 효율산정을 위한 현장실사로 위험상태를 파악하는 실정에 있

으나 이를 발전시켜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 및 조립보험, 해상보험 등의 물적손해를 담보하는 재산보험, 도난·파업·폭동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재산보험, 신체상해위험에 대한 상해보험,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배상책임 및 근재보험 등에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손해보험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로 피보험자가 가진 위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개선방안 제시로 직접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고객관계의 유지로 보험사업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위험관리와 안전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으로 사회일반의 위험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급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PR 활동이 중요하다. 위험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국내외의 전문연수기관에 담당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시키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특히 전문가와 동행하여 수행하는 현장실습교육은 특히 의의가 크다.

3. 맺는 말

위험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개선할 사항이 많으나 우리의 실정으로는 현시점이 위험관리업무에서는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가 적극적인 위험관리로 손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상호간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따라서 이익실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